

검사실시결과통보서

문 서 번 호	E안산지사G5-2025-6079	고객안내번호	4025-2505-0297-2
접 수 번 호	4025-20250507-00029	관할검사기관	안산지사
건 물 명	김흥도미술관		
건 물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2 (성포동)		
검 사 종 류	정기검사	검 사 대 수	1대
검 사 실 시 일	2025.06.17	검사자 / 입회자	이정
판 정 결 과	합격	보완	조건부합격
	1	0	0
	※ 관련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32조 - 합격 : 설치 및 안전검사기준에 맞는 경우 - 보완 : 설치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설치검사 진행중) - 조건부합격 : 설치 및 안전검사기준에 맞지 않으나 그 내용이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한 경우 - 불합격 : 설치 및 안전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안 내 사 항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건물에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하지 않았다면 즉시 안전관리자 선임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법정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 법정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신청 : 승강기민원24(https://minwon.koelsa.or.kr) ※ 교육신청 : 승강기교육센터(https://edu.koelsa.or.kr) ②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검사주기 6개월)가 조건부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가 완료된 후 다음번 검사주기도래 안내문이 발송됨에 따라 해당 승강기는 검사주기도래일에 임박하여 안내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객님의 신청하신 승강기검사에 대한 검사실시결과를 안내드리며,
승강기별 세부사항은 검사성적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23일

첨부 1. 검사실시결과내역서
2. 검사성적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검사실시결과내역서

고객안내번호	4025-2505-0297-2	접수번호	4025-20250507-00029	
건물명	김홍도미술관			
건물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2 (성포동)			
검사종류	정기검사	관할검사기관	안산지사	
검사실시일	2025.06.17			
상세내역				
승강기고유번호	호기(설치장소)	형식/종류	판정결과	검사유효기간(보완기간)
2157-907	1(미술관)	권상식/VVVF/승객용	합격	2025.05.28 ~ 2026.05.27

- 이하여백 -



검 사 성 적 서

□ 승강기정보

건 물 명	김홍도미술관		
건 물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2 (성포동)		
호 기 (설 치장 소)	1(미술관)	승 강 기 고 유 번 호	2157-907
형 식 / 종 류	권상식/VVVF/승객용	운행구간(운행층수)	1-3(3)
제 조 업 체	(주)신일승강기	유 지 관 리 업 체	(주)광일엘리베이터
구 동 기 공 간	MRL	적 재 하 중	1,600 kg
정 격 속 도	1 m/s	매다는장치의자름/두께	12 mm
추락방지안전장치	점차작동형	매다는장치의가닥수	6 가닥

□ 항목별 검사결과

항목	주요내용	결과	항목	주요내용	결과
1.1	기본제원	적합	1.2	기계류 공간	적합
1.3	승강로	적합	1.4	카, 운전 및 접근허용	적합
1.5	매다는 장치, 보상수단, 제동 및 권상	적합	1.6	안전회로	적합
1.7	카 및 균형추의 추락방지안전장치와 과속에 대한 보호	적합	1.8	주행성능 측정	적합
1.9	전기적 보호	적합	1.10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추가 요건	해당없음
1.11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추가요건	해당없음	1.12	피난용 엘리베이터 추가요건	해당없음
1.13	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승강기부품의 상태	적합	1.14	그 밖의 표시 등	적합
1.15	자체점검의 확인	적합			

□ 검사실시정보

검 사 종 류	정기	관 할 검 사 기 관	안산시사
검 사 실 시 일	2025.06.17	판 정 결 과	합격
검 사 자	이정	검사유효기간(보완기간)	2025.05.28 ~ 2026.05.27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발 행 번 호 : 제 4025 - 2 - 2025 - 42602639 - 1 호

검 사 구 분 : 정기검사

건 물 명 칭 : 김홍도미술관

승강기 종류 : 승객용 (설치호기 : 1호기 (미술관))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2

검 사 자 : 이정, 전상엽

대 행 기 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다음 검사신청은 2026년 05월 27일까지 해야 합니다.

승강기번호
2157-907

2025년 06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련 주요사항 안내

※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본 안내문을 관리주체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님께

-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리주체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관리주체의 변경 시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할 지역사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①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건물에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현재,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즉시 선임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승강기 관리주체 책임보험 가입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2.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3.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중 략>
④ 책임보험에 가입(재가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③ 승강기 자체점검 실시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중 략>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④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조치사항

- 승강기 관리주체는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유선 또는 공단 홈페이지 및 승강기안전 종합정보망(국가승강기정보센터)을 통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사고의 관련된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면 안됩니다. (단,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⑤ 승강기 정기검사 수검

-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의 주기는 1년을 기본으로 하며, 승강기의 종류, 사용 연수, 사고·고장 발생여부 등에 따라 6개월, 2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구 분	내 용
시행규칙 제54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1. 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 6개월
	2.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 6개월
	3. 화물용 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텀웨이터),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 2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 1, 2의 경우에는 3에 따라 검사의 주기가 2년인 승강기도 포함하며, 1의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검사주기 6개월 조정

⑥ 정밀안전검사 안전개선 조치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제외)는 승강기 부품 또는 장치를 추가하여 안전성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승강기 종류	추가로 적용하는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
전기식 엘리베이터	¹⁾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²⁾ 승강장문 조립체(이탈방지장치), ³⁾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⁴⁾ 카 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⁵⁾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⁶⁾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⁷⁾ 브레이크 시스템 및 ⁸⁾ 자동구출운전수단 ※ 1), 2), 3), 4), 8) ⇒ 수직 개폐식 문 방식의 경우 적용 제외
유압식 엘리베이터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조립체,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및 카 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 수직 개폐식 문 방식의 경우 모두 적용 제외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포함)	주 브레이크, 보조 브레이크, 과속·역전방지수단, 스커트 디플렉터, 핸드레일 시스템 ※ 스커트 디플렉터 ⇒ 경사형/수평형 무빙워크 적용 제외 보조브레이크, 과속·역전방지수단 ⇒ 수평형 무빙워크 적용 제외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4년이 지나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까지 해당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별표 4의 개정 규정에 맞게 보완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규정을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